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6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4 ~ 88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4 ~ 89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
2014 ~ 90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4 ~ 9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27
2014 ~ 92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5
2014 ~ 93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37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88
----------	-----------

제출일자	2014. 11.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15.01.01.시행)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대상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10조)

○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사유 등을 규정

다.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라.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등을 정함(안 제12조 ~ 제16조)

마.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에 관하여 정함(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 제32조의10

나. 예산조치 : 17,000백만원(‘15년 본예산 요구)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10. 15. ~ 11. 0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제14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14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세부기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②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③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④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⑤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⑥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⑦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⑧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⑨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⑪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⑫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⑬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⑮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⑯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⑰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⑱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⑲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⑳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과 제26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㉑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㉒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3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㉓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㉔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㉕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㉖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㉗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와 제13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㉘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㉙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㉚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㉛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㉜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㉝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 ㉞ 「거창문화원사 관라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비용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32조의10

2. 지방보조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액 한도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 적용대상

- 적용과목 : 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회계 : 일반+ 기타특별회계, 자체사업분

< 연차별 비용 추계 결과 >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이후	비고
계	68,000	17,000	17,000	17,000	17,000	
국비						
지방비	68,000	17,000	17,000	17,000	17,000	
자부담						

작 성 자 기획감사실장 송 재 명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89
----------	-----------

제출일자	2014. 11.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를 정함(안 제2조, 제4조)

○ 금연지도원 해촉시 지도원증 회수 등 기록·관리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정함(안 제5조)

○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이 원칙.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 가능

○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 수행 부여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6,5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10. 22. ~ 11.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구분)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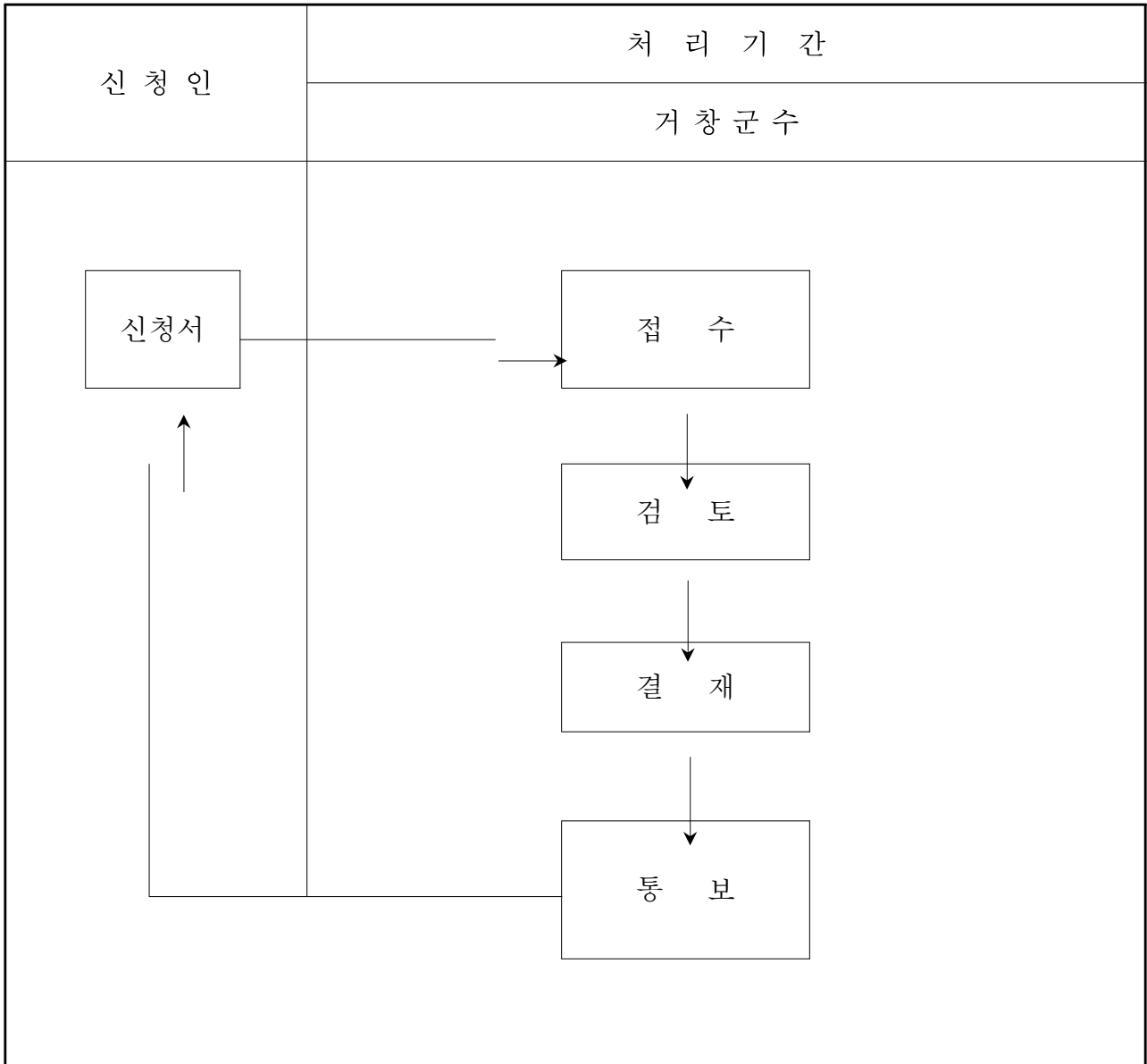
거창군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p>제 호</p> <p>금연지도원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p><p style="text-align: center;">3cm×4cm</p><p style="text-align: center;">(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p></div>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p>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 쪽)
<p>소 속:</p> <p>성 명:</p> <p>생년월일(성별): ()</p> <p>위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직인</p>
<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p> <p>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p> <p>☎ 전화번호 : 000-000-0000</p>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 ² or 플라스틱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p>「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거창군수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

2. 미첨부 사유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지도원 교육
여비등 금연지도원 운영 관리비로,
-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2명)×3,000천원=6,000천원, 금연지도원 교육등 및 금연
지도원 운영관리비 5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거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외대상)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작성하지 아니할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보건소장 이재윤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90
----------	-----------

제출연월일	2014. 11.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야간(18:00~24:00)진료 환경 및 질 개선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야간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6조의2)
 -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180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담당)
- 라. 그 밖에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10. 15. ~ 11. 04.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2(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p>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야간 의료서비스개선 시책 추진 의료기관에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 제6조2(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 ~ 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		180	180	180	180	180	900
세출	군 비	180	180	180	180	180	900
세입		0	0	0	0	0	0

3. 관련 의견

○ 물가상승,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지급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야간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기관에 시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인건비 등)

- 2015년도 예산확보액 : 180,000천원(군비)

작성자 : 보건소장 이 재 윤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91
----------	-----------

제출일자	2014. 11.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 다.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 위탁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7조)
- 라. 안전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1조)
- 마.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 조치 : 2015년도 29,200천원 예산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10. 17. ~ 2014.11. 0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손상”이란 질병이외의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일어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 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2.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협의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2. 사업 추진업무 관련 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상 기전별 또는 연령대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최 종 승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92
----------	-----------

제출연월일	2014. 11.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폐지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이용객의 불만민원 급증,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등으로 '09.01.01부터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폐지 하였으므로 이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4. 10. 30. ~ 1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93
----------	-----------

제출일자	2014. 11.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제고와
-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향후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 등과 관계(안 제1조 ~ 제5조)
- 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다.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신청, 평가·포상(안 제7조 ~ 제9조)
- 라.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17조)
 -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의·자문, 주민 전문가 등 20명 이내 구성
- 마.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8조 ~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20백만원(2015년 본예산 편성)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8. 28. ~ 9. 17.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맞춤형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에 의하여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제안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

제3조(기본이념)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주민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추진주체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사업을 확충하며 공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체계 구성과 지원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7조(마을만들기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
2. 문화·복지 활성화 사업
3.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4.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
5.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인재 발굴·육성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공모전을 통한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나.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제7조(마을만들기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 비용(a - b)		220	220	220	220	220	1,100
세출	군 비	220	220	220	220	220	1,100
	소계(a)	220	220	220	220	220	1,100
세입							
	소계(b)						

3. 관련 의견

- 주민 스스로 공동체형성과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맞춤형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